

의안번호	2220947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계번호	26B445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제1항)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 ※지역방송발전과 관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¹⁾는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1)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

있는데, 지역방송발전과 관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²⁾의 수행을 위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26년 기준 49억 6,400만원임

[표 1]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6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역·중소방송사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체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 프로그램 선정 및 제작비 지원	4,400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콘텐츠 재제작 및 국내·외 콘텐츠 마켓 참가 지원 등 지역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유통 강화 지원	324
	지역방송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방송환경 변화 및 신기술 도입 등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지원	240
합 계			4,964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 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방송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방송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개정안은 지역방송발전과 관련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 신규 사업 실시 및 현행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사업 추가·확대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